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비 규정

개정 2024.11.12

- 제1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하 KSPEN) 연구비라고 칭한다.
- 제2조 (목적) KSPEN 회원의 임상영양 관련 분야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연구 의욕을 고취하여, 학회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1 (자격) KSPEN 정회원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2 (자격) 연구책임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KSPEN 정회원 (평생회원 포함)이어야 한다.
- 제3조-3 (자격) 이미 선정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인 연구자는 또 다른 연구과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 (재원) 연구비는 KSPEN 기금으로 운영하며, 연구비 규모 및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신청) 연구책임자는 KSPEN 연구비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심사) 연구 과제의 심사는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7조 (기간) 연구 기간은 연구비 선정부터 연구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1 (기간연장) 연구자가 연구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위원회는 연구기간 연장신청서를 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 제8조-1 (지급)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연구책임자에게 50%를 선지급 (1차 지급)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나머지 50%를 지급 (2차 지급)한다.
- 제8조-2 (지급) 2차 지급의 시점은 연구의 완료, 연구내용의 발표 및 학회지 게재 등의 연구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제8조-3 (지급) 연구비 지급의 경로는 산학협력단을 통하거나 개인별 연구책임자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단, 직접 지급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으로 일정 세율로 지급된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산학협력단을 통할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1 (의무)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KSPEN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 기간이 종료되고 1년 이내에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Annals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ACNM)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2 (의무) 연구결과 발표 시 KSPEN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3 (의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ACNM)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 (종료)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 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11조-1 (철회) 최초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철회를 요청한 연구과제에 한하여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 제11조-2 (철회) 철회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미사용 연구비 전액과 이미 사용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12 >
- 제11조-3 (철회) 연구비 반환이 결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KSPEN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 제12조 (효력) 본 연구비 규정의 효력은 2023년 1차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삭제 2024.11.12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4.11.12>.

[별지 제 1호 서식] 연구비 선정평가 기준 <개정 2024.11.12>

평가요소	평가 지표 및 항목	배점
연구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연구내용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20
연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PEN 연구과제 공모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인지, 방법론적 접근 (다기관/다학제 여부)이 적절한지 기술되어 있는가? 	30
연구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방법과 추진 체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25
연구예산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비목별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25

[참조] 연구책임자의 연구실행능력은 최소 기준 평가

[별지 제 2호 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양식 <개정 2024.11.12>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부서
연구기간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년)			
신청연구비				
공동연구자	성명	직위	소속	부서
<p>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책임자성명: (인)</p>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귀하				

요약문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비	신청	원	연구 기간	20... 부터 20... 까지
연구내용:				
Key Word	(5개 이내)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연구계획서는 1)~5)에 해당하는 내용을 5page 이내로 제한함
- ✓ 배경 항목에 대한 설명과 작성요령은 동일하게 제출 시 삭제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현황을 설명하고, 본 연구과제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 KSPEN 연구과제 공모에 주제와 내용이 적합한지 기술.

2) 연구 목표

- ✓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 내용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달성가능한지의 유무에 대하여 기술

3) 연구 내용 및 방법

- ✓ 연구 목표와 연구과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세부내용과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 관련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추진 일정

- ✓ 연구 추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연구 결과가 임상 영양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
- ✓ 연구 결과물이 관련분야 연구개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기술

6) 참고문헌

연구책임자 연구업적

연도	SCI(E) 여부	저자구분	논문제목 (저자, 제목, 권, 호, 쪽)	학술지명	IF

※주) 1. 최근 3년간 발표한 연구업적 목록 (학회발표 초록은 제외)

2. 저자구분은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

연구비 실행예산 산정기준

항 목 (예산책정단위)	세부항목 (정산단위)	산 정 기 준	
1.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	· 연구활동비 및 보조원 연구수당		
2. 여비	· 국내여비	· 국내 출장비, 현지교통비, 체재비 등(실 소요경비)	
3. 기술정보활동비	· 참고문헌구입비 · 자문료 ·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4. 연구기자재구입비	· 연구기자재구입비	· 당해과제와 관련된 연구기기구입비	
5. 시설비 및 기자재 임차료	· 시설비 · 기자재 임차료	·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비용 및 부대경비	
6.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재료비 · 전산처리비 · 시험분석료	· 당해과제와 관련된 시약재료비 · 외부에 의뢰, 수행하는 전산사용료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7.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 사무용품비 · 기타경비	· 각 세부항목에 합당한 실소요 제반경비	
8. 회의비	· 회의비	전체 연구비 예산의 20% 이내	

연구기간 연장신청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부서
신청연구비				
연구기간	당초계획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년)		
	변경계획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년)		
변경사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인)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사장 귀하				

연구비 실행예산서

1.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부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2. 연구비 실행계획

(단위 : 원)

지출항목	실행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1.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			
2. 여비(국내)			
3. 기술정보활동비			
4. 연구기자재구입비			
5. 시설비 및 기자재 임차료			
6. 재료 및 전산처리비			
7. 수용비 및 수수료			
8. 회의비			
총액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1.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부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2.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

(단위 : 원)

지출항목	실행예산액 (변경 전)	실행예산액 (변경 후)	산출근거
1.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			
2. 여비(국내)			
3. 기술정보활동비			
4. 연구기자재구입비			
5. 시설비 및 기자재 임차료			
6. 재료 및 전산처리비			
7. 수용비 및 수수료			
8. 회의비			
총액			

3.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연구비 지급청구서

1.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부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2. 연구비 청구내역

(단위: 원)

지출항목	실행예산액	기집행액	예산잔액	금회 청구액
1. 연구활동비 및 인건비				
2. 여비(국내)				
3. 기술정보활동비				
4. 연구기자재구입비				
5. 시설비 및 기자재 임차료				
6. 재료 및 전산처리비				
7. 수용비 및 수수료				
8. 회의비				
총액				

3. 연구비 지급내역

연번	지급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금액(원)
1				
2				

위와 같이 ()차 연구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과제 계약서

"갑"	"을"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7길 16, 403호	주소:
기관명: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기관명:
대표자: 이사장 (인)	연구책임자: (인)
임상연구위원장: (인)	

계 약 조 건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구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의뢰하고 "을"이 수행하는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본 연구의 제목은 2023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연구과제 "화상 및 외상 중환자실에서의 혈중 셀레늄, 아연 농도와 예후와의 상관성 분석"으로 한다.

제2조 ("연구"의 기간)

"을"의 "연구"기간은 연구과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학회지 투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연구 결과 보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을"은 연구 결과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Annals of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에 발표해야 하며,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의 대가 및 지급 방법)

- 1) "연구"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0,00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 2) 연구비 지급은 계약서 작성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비 50%는 연구과제 진행이 50% 되었을 시 연구자 요청에 의한 연구진행 보고 혹은 학술대회 중간보고 발표 등을 통해 연구위원회 동의 하에 지급한다.
- 3) 연구비는 "을"의 연구비 관리계좌(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로 입금한다.

제5조 (연구 종료시 제출 서류)

연구 종료 시에는 종료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 내역서와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신의 성실 및 상호 협조)

- 1)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내 연구 결과물을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연구과제 연구비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